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제447호(號) 1928(昭和 2)년 6월 26일 화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242호(號)

1927(昭和 2)년 조선총독부고시 제128호(號) 조선국유철도 화물운송규칙(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) 중(中) 1928(昭和 3)년 7월 1일부터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28(昭和 3)년 6월 26일 조선총독(朝鮮總督) 야마나시 한조(山梨半造)

제52조(條)제1항(項) 제1호(號) 및 제2호(號), 제53조(條)제3항(項), 제56조제1항(項), 제62조제1항(項) 및 제82조제1항(項) 중(中) 「협궤선(狹軌線) 각(各) 역(驛) 상호간(相互間) 발착(發著)」을 「동일(同一) 협궤선(狹軌線) 내(內) 발착(發著)」으로 개정(改正)함.

제60조(條) 중(中) 「(협궤선[狹軌線] 각[各] 역[驛] 상호간 발착[發著]의 것에 있어서는 4엔[圓])」을 「(동일[同一] 협궤선[狹軌線] 내[內] 발착[發著]의 것에 있어서는 3엔[圓])」으로 개정(改正)함.

제61조(條) 중(中) 「(협궤선[狹軌線] 각[各] 역[驛] 상호간 발착[發著]의 것에 있어서는 6엔[圓])」을 「(동일[同一] 협궤선[狹軌線] 내[內] 발착[發著]의 것에 있어서는 4엔[圓]50전[錢])」으로 개정(改正)함.

제92조(條) 중(中) 「8척(尺)」을 「14척(尺)」으로 개정(改正)함.